

2020년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자격완화

대한민국 신혼부부  
룰루랄라~



10년  
이내

혼인기간  
(7년 → 10년 이내)

13세  
이하

자격의 나이  
(만 6세 → 만 13세 이하)

④ LH콜센터 1600-1004

| LH 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 2020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임주자 수시모집



전국  
21,000호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에서 10년 이내로,  
혼인기구, 한부모가족 자녀의 나이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임주자격 완화!

###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이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주대상자에게 제임대  
하며 임주대상자를 수시 모집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총자산 > ₩ 2,468만원 이하



2,46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등에 한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성인 1~7급)보궐용 차량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구원수별 기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선기준총자산 28,800만원, 지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기준, 유자녀 혼인기구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전반期 등으로 확인)하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 기준)·인양임양신고일기준)하여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기구(만 13세 이하 자녀)

## 기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

[단위 : 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70%	3,065,866	3,938,828	4,358,439	4,856,848	5,315,858
90%	3,941,828	5,064,207	5,603,708	6,244,519	6,834,675

\* 기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신청절차



## 임대조건 (일주자부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지원보증금 규모 금리(연이율)	4천만원 이하 1.0%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2.0%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단, 최저금리는 1.0%)

\*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유통계획 용지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예시(수도권)

#### 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자녀가 없는 경우】



##### 【자녀가 1명인 경우】

|임대보증금| 600만원  
|월 임대료|  $\frac{[(전세금 - 임대보증금) \times 2\%(\text{연})]}{12} = 190,000\text{원}$

### 예시(수도권)

#### 전세보증금 8천만원, 월세 30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자금보증을 선택한 경우】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자체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기준)

\* 단, 재계약 시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원수별기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어야 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자체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임대보증금| 760만원  
|월 임대료|  $\frac{[(전세금 - 임대보증금) \times 2.0\%(\text{연})]}{12} = 360\text{만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자체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 단, 재계약 시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원수별기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어야 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자체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 신청기간

2020. 06. 08(월) 10:00 ~ 12. 31(목) 18:00까지

상시 신청

※ 2020년 공급목표 대비 공급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주민등록표등본, 흔인관계증명서 등을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과 관련서류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 입주대상자안내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소요

※ 수급자, 치성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는 입주대상자 신청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기능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 「전체」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비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시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디자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기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sup>2</sup>)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 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0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기 부담하고 3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세요?

| 전세임대 문의처 |

지역본부	관할지역	문의처
서울본부	서울·경기북부	1670-2591 (문자상담 가능, 45자 이내로 제한)
경기본부	경기남부	1670-2592
인천본부	인천·경기서부	1670-2593
부산울산본부	부산·울산	1670-2581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	1670-2582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	1670-2598
대전충남본부	대전·세종·충남	1670-2586
강원본부	강원	033)258-4104, 4127, 4128 (043)901-4564
충북본부	충북	1670-2596
전북본부	전북	1670-2599
경남본부	경남	1670-2583
제주본부	제주	064)720-3936

**LH 마이홈 콜센터**  
([www.lh.or.kr](http://www.lh.or.kr))

※ 경기북부 : 7명, 구리, 담양주, 동드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 경기남부 : 괴천, 광주, 군포, 수원, 안성, 안성, 양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 경기서부 :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퍼주

언제·어디서나·누구나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포털**

[jeonse.lh.or.kr](http://jeonse.lh.or.kr)

